

2026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인원 및 직무

분야	직급	인원	근무기간	주요 직무내용
정책 지원관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시간)	-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등 관련 자료 취합·분석지원 - 의원의 구정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화·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등 지원 -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 기간 연장이 가능

2.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 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나. 응시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분야	요건	
정책 지원관	응시 요건	경력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②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③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불가 *근무경력의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관련분야 경력] ▶ 지방의회·국회·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에서 ▶ 법제·법무, 예산·결산·재정 분석, 의원보좌·의정활동 지원, 감사, 정책 개발·분석·연구, 지방 자치행정 사무(문화 복지, 녹지,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등) 등 이와 관련된 분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go.kr),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기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규정

- ❖ 응시자격요건(경력 ①, ② ③)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3,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에 따라 상위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 업무 명시,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날인, 연락처 기재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 경력요건(3호)으로 응시할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 대학교과 경력과 학위 취득과정 미 인정, 개인사업자 경력 미인정
- ❖ 경력요건(3호)의 경력 계산 시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1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2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 전부를 인정(주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닐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예시 : 주35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시민단체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함.(근무기간이 긴 경력)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아래 서류*로 보완해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 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모두 제출
-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3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가.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 근무)

※ 근무환경에 따라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나. 임용기간

○ 임용 예정일 : 2026. 8. 10.(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무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 및 관련규정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다. 보수수준

○ 연 봉 : 50,272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연봉한계액 하한액 책정 원칙

직급	상한액	하한액
7급(상당)	70,782천원	50,272천원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 가입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명예퇴직 수당 수령자가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함(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5. 시험 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가능

※ 재공고 시 동 채용분야에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자로 같음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평 정 요 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및 제출서류

가.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임용예정일	비고
2026.06.26.(금) ~07.06.(월)	2026.07.02.(목) ~07.06.(월)	07.15.(수)(예정)	추후 별도 공고	2026.08.10.(월)	임용일 변동가능

※ 공고 및 발표는 연수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상기 일정은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7. 2.(목)~7. 6.(월) 3일간(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팩스,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방문접수]

- 접 수 처: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의정팀)(1층)
- 수입증지: 연수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연수구 수입증지” 구입 후 원서 제출
- ※ 대리접수 가능
- ※ 근무시간(09:00~18:00) 내 제출/ 중식시간(12:00~13:00),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등기접수]

- 접 수 처: (21967)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 1층 의정팀
- 수 수 료: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붙임3] <봉투표지 양식>을 우편봉투 겉면에 활용

[공통사항]

-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미비한 서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연수구 수입증지 또는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금액)로 동봉(기타 증지 불가)
- ※ 응시수수료 :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등기접수자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만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7.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나.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급(가급)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연수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수구 수입증지” 구입 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다.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작성 시,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 직무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거나 <별지 제7호 서식> 제출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 업무 명시,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날인, 연락처 기재
 -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아래 서류*로 보완해야 함.
- *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모두 제출

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기간” “직장가입자” 설정

바.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작성 시,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A4용지 2매 이내 작성

사.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붙임2]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임용예정분야의 직무에대한 성과목표,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A4용지 2매 이내 작성

아. 자격검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전형위원회에 개인정보 미제공)

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별지 제8호 서식>

카.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응시자격요건 해당자 필수,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회에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학사 이상의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타. 자기소개서,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및 기타 임용분야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 수상실적, 연구실적, 논문, 저서 등
 - 자유양식, 해당자에 한함, 논문, 저서 등은 A4 3매 이내로 요지 첨부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락지 사용금지, 양면인쇄 금지)

※ 해외 발급 증명 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8. 안내 및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임용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을 숙지하고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해드립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 등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해당여부 및 응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1차 서류 심사 시 제출서류 발급기관에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응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 조회,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라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3조3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032-749-8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연수구의회 및 연수구 홈페이지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형법 제43조, 제44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른 선거범죄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치료감호법」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붙임 2

임용예정 직위 직무 기술서

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지(부서)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등 관련 자료 취합·분석지원 ○ 의원의 구정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등 지원 ○ 그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성실성, 팀워크 * 연수구 및 연수구의회 전반에 대한 이해력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전략적 사고력, 분석력, 대안제시 능력
-------	---

필요 지식	○ 지방의회 회기운영, 의사진행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지식 ○ 조례안, 결의안, 예산안·결산 등 의안의 유형 및 제안 등의 관리와 작성에 필요한 지식 ○ 연수구 및 연수구의회 전반에 대한 이해
-------	--

응시 자격 요건	경 력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②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③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불가 ※근무경력의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관련분야 경력] ▶ 지방의회·국회·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에서 ▶ 법제·법무, 예산·결산·재정 분석, 의원보좌·의정활동 지원, 감사, 정책 개발·분석연구, 지방 자치행정 사무(문화 복지 녹지,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등) 등 이와 관련된 분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go.kr),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기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규정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정보 및 요건

성 명	응시직급	응시직무분야	응시 자격요건 ※해당 요건 체크(V)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정책지원관	☐ 1. ☐ 2. ☐ 3.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 합산금지

□ 제출서류 목록

연번	제 출 목 록	제출 대상자	제출여부 ("○"표시)
공통 서류	제출서류 목록표	모 든 응시자	
	응시원서(별지 1)		
	이력서(별지 2)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무확인 어려운 경우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별지 7)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기소개서(별지 3)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4)		
	자격검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6) 또는 주민등록초본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별지 8)		
	최종학력 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기타	이력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 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논문□, 저서□, 기타()	해당 시	
	해당 있는 경우 체크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가족관계증명서) □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락지 사용금지, 양면인쇄 금지)

※ 해외 발급 증명 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 반드시 준수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원본)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 연수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판매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정책지원관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⑧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지방임기제공무원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6. 연수구 수입인지 : 연수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주 의 사 항 >>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관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일 전일까지 접수처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 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강릉자가 기재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 해당란에만 기재					
경 력	근무기관(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자격요건 경력만 기입				
	○○○○	19.1.1. ~ 20.12.5.(~개월) (휴직 사유 및 기간표시) *예: '19.6.1.~'19.12.31.(질병휴직)	담당자 (0급)	상세하게 작성	주당 근무시간 (주 00시간)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종류	
	학교명은 기재하지 말것				
병 역	군필여부			비 고	
	ex) 군필 / 면제 / 해당없음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이 력 서 작 성 요 령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칸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미기재 란’은 삭제하여 제출

1. 경력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전일/시간제)

- 주 40시간 근무 시 경력증명서에

“상근” 또는 “전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등이 명기되어야 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2.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 이내로 작성

【학위사항 작성요령】

①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근 취득 순(박사-석사-학사)으로 기재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 기간 계산은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며, 월별 계산의 경우 1달 미만의 경우 반올림 불가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③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주 40시간 미만)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1년간 주20시간 근무시 → 12개월*20/40=6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 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 제출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직무기술서를 참고로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예)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2매 이내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한 -
자격검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전자우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발급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발급기관(업무관계자)에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보유)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지방(시간선택제,일반)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신규채용 절차	<u>주민등록표 초본</u> (병역사항 포함)	서명 또는 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_____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및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이용기관의 명칭 : 연수구의의회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7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경력 사항	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상세기재)		근무기간 시작일 종료일		주당 근무시간								
			※공고문에 게시된 당해 경력(업무)이 기재되어야 함												
	비고	휴직기간 등 기재													
입사 일자	년 월 일		재직기간	년 월	주 근무시간	시간									
퇴사 일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기관명) 대표자 주소 (직인) <table><tr><td colspan="2">발급담당자</td></tr><tr><td>소속</td><td></td></tr><tr><td>직위</td><td></td></tr><tr><td>성명</td><td>(인)</td></tr></table>								발급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발급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직인,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담당자 도장 날인), 연락처 등 기재
※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

<별지 제8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임용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해당 ☐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해당 ☐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

(서명)

<봉투표지 양식> ※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응시분야) 정책지원관

[2026년 제3회 일반임기제공무원채용 응시원서 재증]

받는 사람

우)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 1층
의정팀

채용담당자 앞